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8.

의안 번호	449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7. 강남구청장(정책홍보실)

나. 상정의결

-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9. 10.)
  “심사보류”
-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0. 20.)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가. 제안이유

○ 민선7기 홈페이지 기획·운영 등의 사무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이관된 바, 이를 반영하고 운영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서별 소관 사무 명확화(안 제2조, 제7조, 제13조제3항)

○ 재난 정보 제공 등 홈페이지 기능 보완(안 제3조제2항)

○ 홈페이지 운영 주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

○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기준 정비(안 제6조제2항)

○ 홈페이지 폐기 기준 신설(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21. 7. 23. ~ 2021.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2019.1.1. 조직개편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강남구 홈페이지 기획·운영 등의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는 정보화부서(전산정보과)로 규정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음. 이와 같이 행정기관 홈페이지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 홈페이지가 각 행정기관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운영자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최일선 접촉창구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코로나19로 행정업무가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여짐.

- 홈페이지의 기능은 첫째,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벗어난 쌍방향적 매개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주민참여는 시간적 · 공간적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대응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음.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은 기존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비공개, 민원처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지역정보, 취업정보, 자원봉사 정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넷째, 민자유치, 관광홍보, 특산물 판매 등 자치단체 마케팅 관련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다섯째, 공지사항(새소식), 입찰정보, 입법예고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연혁, 상징물, 각 부서의 업무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책자료, 조례 · 규칙 정보, 각종 조사통계, 발간물, 공보 등을 주민이 제공 받을 수 있음. 여섯째,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게시판을 통해 각종 기관의 행사 등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고, 민원신청, 의견청취, 여론조사 등을 전달 할 수 있음. 따라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변화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2조(정의)제4호 및 제5호의 신설규정은 유사 <사례>[1]를 참고하여 통일성을 위해 <예시>[2]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제2항제2호는 홈페이지에 포함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3호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3항에서는 제2조 정의규정에 용어를 신설함에 따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홈페이지를 정책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4항에서는 정보화부서의 장(현 전산정보과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바 정의규정에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에도

---

1)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예시>**

4. “주관부서”란 홈페이지의 기획 ·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여짐.

- 안 제4조(홈페이지 개선) 및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의 규정 중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일부가 중복규정[3]되어 있는 바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제2항제8호에서는 기존의 구체적인 규정을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구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나 '공익'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임. 제2항제9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의 규정은 홈페이지 구축을 정책홍보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 운영)제3항 중 홈페이지 범주에는 외국어 홈페이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사례>[4]와 같이 조례 제3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바 <예시>[5]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없다고 보임. 또한 홈페이지 운영은 정책홍보실에서 직접 통합관리하고 있는 바 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담당부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의 신설규정은 활용도가 낮은 홈페이지를 폐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책홍보실의 홈페이지 통합관리에 따른 것으로 이해

---

3) **<예시>**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

4) **<사례>**

<개정안> 제3조(홈페이지 구축 · 운영)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 운영)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 ·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예시>**

제3조(홈페이지 구축 · 운영) ③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됨. 다만, <예시>[6]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은 「전자정부법」[7]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은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6) **<예시>**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등) ①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7)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개정안 중 관련 사항의 주체가 구청장인지 주관부서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여 주신다면 문제가 되는 조문을 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49호

제안일자 : 2021.10.18.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운영에 대한 위탁규정을 수정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정리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홈페이지 관련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 및 통일화(안 제2조)

○ 외국어 홈페이지의 별도 규정을 일원화(안 제3조제3항)

○ 외국어 홈페이지 규정 일원화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13조제3항)

○ 홈페이지 폐기 및 이관에 대한 주관부서 역할의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를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을 “ “주관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을 “ “담당부서”란”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 용역을 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강남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로, “폐기할 수 있다”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3. “전자민원”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신 설>	4.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홈페이지 기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홈페이지 기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5.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생 략)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② ----------.
1. (생 략)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1. 구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3. (개정안과 같음)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	④ ---------- ---------- ---------- 구청장--	④ (개정안과 같음)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 -----.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 ---------- 주관부서와 담당부서-- ---------- ---------- ---------- ----------.	<삭 제>
<신 설>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

제출년월일 : 2021. 8. 27.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정책홍보실

1. 제안이유

민선7기 홈페이지 기획·운영 등의 사무가 전산정보과에서 정책홍보실로 이관된 바, 이를 반영하고 운영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소관 사무 명확화(안 제2조, 제7조, 제13조제3항)

나. 재난 정보 제공 등 홈페이지 기능 보완(안 제3조제2항)

다. 홈페이지 운영 주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기준 정비(안 제6조제2항)

마. 홈페이지 폐기 기준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7.23. ~ 2021. 8. 12.)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홈페이지 기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구청장”으로, “총괄 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부서”를 각각 “주관부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담당부서”를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홈페이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홈페이지 기획·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5. “홈페이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생략)	제3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 주관부서와 담당부서-- ---------- ---------- ---------- ---------- ----------.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 구청장---- ---------- ---------- ----------.
제4조(홈페이지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개선) 구청장------- ---------- ----------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 ---------- ---------- --- 관리----------.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 ---------- ----------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구청장---------- ---------- ---------- -- ---------- ----------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인 경우	9. -----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실·담당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

관·과·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 ---------- 주관부서------- ----------.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 ----------.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	제13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 주관부서와 담당부서---------- ---------- ------.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 ---------- ----------.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 ---------- ---------- ---------- ----------.
<신 설>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

	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일부 운영기준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정책홍보실 행정6급 홍주영(02-3423-5113)